

범죄예방기본법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60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박균택 · 정준호 · 양부남
박 정 · 정일영 · 한민수
김동아 · 황명선 · 한준호
권칠승 · 이건태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각종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범방지대책 강구,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등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범죄예방정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를 총괄하여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범죄예방 활동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의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및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민간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체계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며, 개별 범죄예방정책 마다 각각의 법규들이 존

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범죄예방 등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총괄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개별 법규에 따라 추진하던 각각의 기본계획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통합·정비하여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의 정의(안 제2조)

범죄예방이란 각종 범죄의 발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등은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범죄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 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지역별 균형, 재원 마련 노력, 범죄예방 관련 자료 표준화 및 실태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및 공공부문·민간부문 간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라.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1)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2) 범죄예방 기본계획에는 범죄예방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주요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정책과제별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임, 연구·교육·홍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청소년비행 예방,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마. 범죄예방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 1)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2) 법무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 3) 법무부장관은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범죄예방정책 분석·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바. 범죄예방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1) 범죄예방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 점검·평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예방정책협의회를 설치함.
- 2) 협의회는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정책 추진상황 점검·평가·조정, 실태조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조정·역할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

사. 범죄예방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등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아. 범죄예방정책실무위원회 설치(안 제10조)

범죄예방정책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정책협의회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함.

자. 범죄예방지역협의체 설치(안 제11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장·지방검찰청검사장·시도경찰청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예방지역협의체

를 설치함.

차. 범죄예방 실태조사(안 제14조)

- 1)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 추진 상황, 범죄예방 활동 현황, 범죄 예방 관련 통계 분석, 지역별·유형별 범죄예방 지원 상황 등 종합실태를 조사·연구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2)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시설의 장에게 범죄예방 관련 통계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함.

카.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안 제16조 ~ 제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유형 및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안 제18조 ~ 제21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는 한편,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소·대학 등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음.
- 2) 협의회 위원장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3)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

방자치단체·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파. 자원봉사단체등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22조 ~ 제25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등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시·도지사는 범죄예방 관련 국가기관, 자원봉사단체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단체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범죄예방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이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란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등의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이하 “자원봉사단체등”이라 한다)는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정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범죄 예방정책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범죄예방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범죄예방정책은 지역 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수립·시행할 것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4. 범죄예방을 위한 자료들을 표준화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범죄 예방정책 시행에 활용할 것
5. 범죄예방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범죄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범죄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3. 핵심 정책과제별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임
4.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5.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표준화 및 관리·공유
8. 범죄 동향 및 원인 분석
9. 범죄예방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10.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법무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범죄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범죄예방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범죄예방정책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분석·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범죄예방정책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제6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범죄예방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범죄예방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예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범죄예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관련 재원의 배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조정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심의·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

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대검찰청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2.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범죄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범죄예방정책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정책협의회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

예방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범죄예방정책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범죄예방지역협의체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범죄예방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체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지방검찰청검사장, 시·도경찰청장, 범죄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범죄예방정책책임관의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범죄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범죄예방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전담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

양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범죄예방 교육·홍보,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나 그 밖에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범죄예방 실태조사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 추진 상황, 범죄예방 활동의 현황, 범죄예방 관련 통계 분석, 지역별·유형별 범죄예방 지원 상황 등 종합실태를 조사·연구하여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법원·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의 장이나 단체·시설의 장에게 범죄예방 관련 통계 등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범죄예방 관련 통계 등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실태조사 결과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지방검찰청검사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지방검찰청검사장,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범죄예방 실태조사 결과 등을 범죄예방정책의 수립·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실태조사의 결과 통보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제16조(범죄예방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범죄 유형 및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방안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교육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7조(범죄예방 활동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제18조(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범죄발생현황, 지역 주민의 성별, 연령대, 인구수 등 지역적 특성, 범죄유발 요인 등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파악한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연구 등의 의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소, 대학 및 그 밖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민간 단체 등의 직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자원봉사단체등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22조(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등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등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관련 국가기관, 자원봉사단체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단체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예방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 및 범죄예방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